



# 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



제409호 2017. 01. 18. (수)

## 【고 시】

- 정선군고시 제2017-3호 정선군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.....1
- 정선군고시 제2017-6호 정선군 군관리계획(도로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.....3

## 【공 고】

- 정선군공고 제2017-41호 2017년도 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 공고.....8
- 정선군공고 제2017-68호 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(안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공람·공고.....10

고 시

정선군고시 제2017- 3호

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

- 1. 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시설: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,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(경미한 변경) 하고,
- 2.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- 3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7년 1월 6일

정 선 군 수

가. 결정(변경)취지 :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외부에 조성된 일부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나. 위 치 :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-1번지 일원

다.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시설: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19,703	-	19,703	100.0	
주거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245	감)245	-	
녹지지역	자연녹지지역	19,458	증)245	19,703	100.0

○ 용도지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

도면표시 변 호	위 치	용 도 지 역		면적 (㎡)	용적률	결정(변경) 사유
		기 정	변 경			
-	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-160번지	제1종 일반 주거 지역	자연 녹지 지역	245	100% 이하	· 수질오염방지시설 입지가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.

2)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①	삼탄수질 정화시설	수질오 염 방지시 설	고한읍 고한리 3-1대 일원	19,458	증)245	19,703	정선고 제2010-96 호 (2010.7.9)	

○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

도면표시 변 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①	삼탄수질 정화시설	· 면적 확대 - 9,458㎡→19,703㎡ (증245㎡)	·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외부에 조성된 일부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포함하고자 함.

라.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시설: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:  
실음생략(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)

정선군고시 제2017-6호

정선 군관리계획(도로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

1. 정선군고시 제2016-127호(2016.12.2.)로 고시한 정선 군관리계획(도로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건과 정선군고시 제2016-55호(2016.7.1.) 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사항 중 내용이 상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정정고시 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7년 01월 18일

정 선 군 수

가. 결정(변경)취지(정정사유) : 2016.7.1. 결정(변경) 고시한 고한·사북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 중 내용이 상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정정하고자 함

나. 정정내용 :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의 내용 및 선형 정리에 의한 면적 보정,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내용 등

다.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(변경 없음)

라.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1) 고한·사북 지구단위계획구역

가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

(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 - 변경없음

(2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- 변경없음

(가)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구역

■ 도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소로	2	6	8	국지 도로	48	중로 3-3 사북리 368-25도	소로 1-3 사북리 452-78대	일 반 도로	사북8리	강고26호 (79.2.8)	
폐지	소로	2	6	8	국지 도로	48	중로 3-3 사북리 368-25도	소로 1-3 사북리 452-78대	일 반 도로	사북8리	강고26호 (79.2.8)	

■ 도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

구분	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폐지	소로 2-6	-	◦ 도로폐지 - B=8m, L=48m	◦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(2016.03.15)에 따른 시설 폐지

(나) 고한리2-1 지구단위계획구역

■ 도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2	29	8	국지 도로	48	소로 1-13 고한리 127-13임	소로 1-2 고한리 127-48대	일 반 도로		강고2577호 (73.12.26)	
폐지	소로	2	29	8	국지 도로	48	소로 1-13 고한리 127-13임	소로 1-2 고한리 127-48대	일 반 도로		강고2577호 (73.12.26)	
기정	소로	2	31	8	국지 도로	73	소로 1-13 고한리 138-5전	소로 1-2 고한리 138-9전	일 반 도로	고한13리 마을회관	강고2577호 (73.12.26)	
폐지	소로	2	31	8	국지 도로	73	소로 1-13 고한리 138-5전	소로 1-2 고한리 138-9전	일 반 도로	고한13리 마을회관	강고2577호 (73.12.26)	

■ 도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

구분	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폐지	소로 2-29	-	◦ 도로폐지 - B=8m, L=48m	◦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(2016.03.15)에 따른 시설 폐지
폐지	소로 2-31	-	◦ 도로폐지 - B=8m, L=73m	◦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(2016.03.15)에 따른 시설 폐지

(다) 고한리2-2 지구단위계획구역

■ 도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2	29	8	국지 도로	48	소로 1-13 고한리 127-13임	소로 1-2 고한리 127-48대	일 반 도로		강고2577호 (73.12.26)	
폐지	소로	2	29	8	국지 도로	48	소로 1-13 고한리 127-13임	소로 1-2 고한리 127-48대	일 반 도로		강고2577호 (73.12.26)	

■ 도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

구분	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폐지	소로 2-29	-	◦ 도로폐지 - B=8m, L=48m	◦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(2016.03.15)에 따른 시설 폐지

나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

- (1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(내용 정정)

(가) 사북2구역

구분	가구 번호	기정 면적 (㎡)	획 지		증·감	비 고
			위 치	면적(㎡)		
기정	B1	1,650	사북읍 사북리 366-43번지 일원	1,650	-	
기정	B2	2,497	사북읍 사북리 368-4번지 일원	2,497	-	
변경	B2	2,497	사북읍 사북리 368-4번지 일원	2,908	증)411	소로2-6호선 폐지에 따른 면적 증가
기정	B3	8,168	사북읍 사북리 366-56번지 일원	8,168	-	
기정	B4	9,542	사북읍 사북리 366-24번지 일원	9,542	-	
기정	B5	1,240	사북읍 사북리 366-72번지 일원	1,240	-	
기정	B6	9,013	사북읍 사북리 369-84번지 일원	9,013	-	
기정	B7	5,700	사북읍 사북리 373-4번지 일원	5,700	-	

(나) 고한리2-1구역

구분	가구 번호	기정 면적 (㎡)	획 지		증·감	비 고
			위 치	면적(㎡)		
기정	B1	16,128	고한읍 고한리 142번지 일원	16,128	-	
기정	B2	3,975	고한읍 고한리 140-5번지 일원	3,975	-	
폐지	B2	3,975	고한읍 고한리 140-5번지 일원	-	감)3,975	소로2-31호선 폐지에 따른 가구 합병
기정	B3	10,595	고한읍 고한리 136-20번지 일원	10,595	-	
변경	B3	10,595	고한읍 고한리 136-20번지 일원	15,178	증)4,583	소로2-31호선 폐지에 따른 가구 합병
기정	B4	8,969	고한읍 고한리 128-2번지 일원	8,969	-	
변경	B4	8,969	고한읍 고한리 128-2번지 일원	9,191	증)222	소로2-29호선 폐지에 따른 면적 증가

(다) 고한리2-2구역

구분	가구 번호	기정 면적 (㎡)	획 지		증·감	비 고
			위 치	면적(㎡)		
기정	C1	9,002	고한읍 고한리 127-3번지 일원	9,002	-	
변경	C1	9,002	고한읍 고한리 127-3번지 일원	9,205	증)203	소로2-29호선 폐지에 따른 면적 증가
기정	C2	5,558	고한읍 고한리 124-21번지 일원	5,558	-	
기정	C3	600	고한읍 고한리 274-86번지 일원	600	-	
기정	C4	4,820	고한읍 고한리 125-6번지 일원	5,510	-	
기정	C5	3,740	고한읍 고한리 120-6번지 일원	3,740	-	
기정	C6	16,618	고한읍 고한리 106-3번지 일원	21,611	-	*정선군고시 제2016-55호 반영
기정	C7	2,956	고한읍 고한리 106-3번지 일원	2,956	-	*정선군고시 제2016-55호 반영
기정	C8	2,037	고한읍 고한리 106-3번지 일원	2,037	-	*정선군고시 제2016-55호 반영

다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계획

(1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계획 내용

- 변경없음

(2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군관리 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- 변경없음

## (가) 고한2-1구역

구분	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기정	B1	정선군 고함읍 고한리 142번지 일원	용 도	◦ 불허용도 1 / 권장용도 C	
			건 폐 율	◦ 50%	
			용 적 륜	◦ 기준(허용) : 400%	
			높 이	◦ 12층(45m)이하	
			배 치	◦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◦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◦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건 축 선	◦ 해당사항 없음				
기정	B2	정선군 고함읍 고한리 140-5번지 일원	용 도	◦ 불허용도 1 / 권장용도 C	
			건 폐 율	◦ 80%	
			용 적 륜	◦ 기준 : 400% 허용 : 500%	
			높 이	◦ 8층(28m)이하	
			배 치	◦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◦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◦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건 축 선	◦ 해당사항 없음				
폐지	B2	정선군 고함읍 고한리 140-5번지 일원	용 도	◦ 불허용도 1 / 권장용도 C	
			건 폐 율	◦ 80%	
			용 적 륜	◦ 기준 : 400% 허용 : 500%	
			높 이	◦ 8층(28m)이하	
			배 치	◦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◦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◦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건 축 선	◦ 해당사항 없음				
기정	B3	정선군 고함읍 고한리 136-20번지 일원	용 도	◦ 불허용도 1 / 권장용도 C	
			건 폐 율	◦ 80%	
			용 적 륜	◦ 기준 : 400% 허용 : 500%	
			높 이	◦ 8층(28m)이하	
			배 치	◦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◦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◦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건 축 선	◦ 보차혼용통로				
기정	B4	정선군 고함읍 고한리 128-2번지 일원	용 도	◦ 불허용도 1 / 권장용도 C	
			건 폐 율	◦ 80%	
			용 적 륜	◦ 기준 : 400% 허용 : 500%	
			높 이	◦ 8층(28m)이하	
			배 치	◦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◦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◦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건 축 선	◦ 보차혼용통로				

라)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

(1)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내용 - 변경없음

(2)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(내용 정정)

(가) 고한2-1구역

구분	도면번호	위 치	계획내용	비 고
기정	B1	고한리 142번지 일원	◦ 공개공지 - 주차출입구 전면부로 위치변경, 면적 : 890㎡	
			◦ 주차출입구 : 대상지의 전면부에 8m와 15m 폭원지정 - 차량흐름을 최대한 고려	
			◦ 보행주차출입구 : 전면부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보행통행이 가능한 출입구 조성	
			◦ 차량동선 : 이동 및 상충을 최소화하도록 지정	
			◦ 보행동선 : 차량의 이동과 분리,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지정	
기정	B2	고한리 140-5번지 일원	◦ 해당사항 없음 ※ 보차혼용통로 폐지	
폐지	B2	고한리 140-5번지 일원	◦ 해당사항 없음 ※ 보차혼용통로 폐지	
기정	B3	고한리 136-20번지 일원	◦ 보차혼용통로(B=4m), 공동주차출입구 ※ 보차혼용통로 일부구간 폐지	※정선군고시 제2016-55호 반영
변경	B3	고한리 136-20번지 일원	◦ 보차혼용통로(B=4m) ※ 보차혼용통로 연장 변경	
기정	B4	고한리 128-2번지 일원	◦ 보차혼용통로(B=4m) ※ 블록번호 변경(B5→B4)	

마. 군관리계획(도로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도 : 실음생략

**공 고**

정선군 공고 : 제2017-41호

**2017년도 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 공고**

2017년도 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월 9일

정 선 군 수

1. 모집인원 : 90명(정선읍 13명, 고한읍 5명, 사북읍 5명, 신동읍 10명, 화암면 12명, 남면 12명, 여량면 9명, 북평면 9명, 임계면 15명)
2. 종사업무 : 산불예방 활동 및 감시, 산불진화, 각종 산림사업 등
3. 근무기간 : 봄철 2017. 2. 1. ~ 2017. 5. 15.  
(배치기간은 기상상태 등 정선군 사정에 따라 조정)
4. 모집방법 :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
5. 응시자격 : 모집공고일(2017년 1월 9일) 현재 정선군내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이 정선군으로 되어 있는 신체건강하고 야간산불 등 비상 시 대비 각 근무지(해당 읍·면사무소)에 20분내 소집 가능한 자.
6. 대상자 확정발표 : 2017. 1월 중 해당 읍·면별 개별통보
7. 확정 대상자 처우 : 해당 읍·면 산불유급감시원으로 채용(1일 임금 52,000원)

## 8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교부 및 접수기간: 2017. 1. 9. ~ 1. 13.

- 정선읍사무소(560-2604), 고한읍사무소(560-2614), 사북읍사무소(506-2624), 신동읍사무소(560-2634), 화암면사무소(560-2644), 남면사무소(560-2654), 여량면사무소(560-2664), 북평면사무소(560-2674), 임계면사무소(560-2684)

나.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해당 읍·면사무소 방문하여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접수처 제출

## 9. 제출서류

가. 응시원서 : 1통(신청자 직접방문 후 작성) -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부착

나. 이력서 : 1통

다. 주민등록등본 : 1통

라. 채용신체검사서 : 1통

## 10. 응시자 유의사항

가. 제출서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부담입니다.

나. 본 모집공고 계획은 우리 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  
(변경 시 별도 공고)

다. 산불위치관계 시스템 도입에 따른 위치관계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선발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라.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선군 환경산림과 산림보호팀 및 해당 읍·면 산업개발팀으로 문의 바랍니다.

마.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시 선발을 취소한다. 끝.

정선군 공고 제2017-68호

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(안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 
공람·공고

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과 이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과 『환경영향평가법』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01월 18일

정 선 군 수

1. 공람목적 : 성신미네필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결정(안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
2. 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
  - 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(안) : 계획관리지역 22,141㎡ ⇨ 50,935㎡(증 28,794㎡)  
보전관리지역 684㎡ ⇨ - ㎡(감 684㎡)  
농림지역 28,110㎡ ⇨ - ㎡(감 28,110㎡)
  - 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안)
    - 성신미네필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(신설) : 50,935㎡
  - 다.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
    - 성신미네필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: 세부내용 게재생략(공람장소 비치)
  - 라.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: 게재 생략(공람장소 비치)
3.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장소 : 정선군 도시건축과, 남면사무소
4. 공람기간 :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이상 (2017. 01. 18 ~ 2017. 02. 02.까지)
5.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: 공람 기간내 정선군 도시건축과 및 남면사무소에 서면제출
6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건축과(☎ 560-2132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